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73,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5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대안소일텍(Daean Soiltec Co.,Ltd) (김인철)
 ②(주)포스코건설 (한성희) ③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권순호) ④대우조선해양건설(주) (한글랜상,
 서복남) ⑤양우건설(주) (고삼상)

나. 전화번호 : ①02-387-4207 ②032-748-1840 ③02-2008-9114 ④02-750-8311 ⑤02-2679-5200

2. 명칭 : 내부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 (BSCW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비대칭 단면이나 15,000m² 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별도의 지보재(지반앵커, 수평버팀 등)를 설치할 수 없고 N값이 사질토인 경우 10이하, 점성토인 경우 4이하인 연약지반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의 보강격벽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를 구성하고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심도 10m 이하에서 자립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 굴착공정의 시공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비대칭 단면이나 15,000m² 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별도의 지보재를 설치할 수 없는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격벽으로 연결한 흙막이 벽체의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흙막이 벽체가 심도 10m 이하에서 자립하도록 하는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2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의결정족수, 위원의 해임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의 도입(안 제9조)

1)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